

=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6. 5 ----- 사하구청장
- 나. 회 부 일 자 : 2007. 6. 8
- 다. 상 정 일 자 : 제14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07.6.15)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임석진 세무과장)

가.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기조례」의 개정으로 변경된 구 심벌마크에 맞추어 우리구 수입증지 조례에 규정된 수입증지 문양을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수입증지에 인영된 사하구 상징문양을 새로 바뀐 문양으로 변경하고 문양위치를 상단부에 표시되도록 함.

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9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 개정안은 2007. 5. 15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기조례」의 개정으로 우리구 심벌마크가 변경됨에 따라 앞으로 우리구에서 발급하는 각종 제증명에 사용할 「계기 수입증지」와 「무인발급기 수입증지」의 규격과 모양을 변경된 심벌마크와 동일하게 바꾸려는 것으로
- 이는 우리구 구기조례개정과 관련하여 당연히 뒤따라야 하는 후속 조치사항이기 때문에 원안 가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 론 요 지 : 없음

7. 심 사 결 과 : 수정의결

붙임 : 수정안 대비표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3조(적용범위) ①구에서 수입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구에서 발행하는 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p> <p>②~③ (생략)</p>	<p>제3조(적용범위) ①----- ----- ----- <u>납부하여야 한다.</u></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3조(적용범위) ①----- ----- ----- <u>납부하여야 한다.</u></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6조(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 ①증지의 종류는 10원권, 40원권, 50원권, 60원권, 100원권, 200원, 300원권, 500원권, 1,000원권, 2,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으로 한다. 단, 계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입증지의 종류는 예외로 한다.</p> <p>②~④ (생략)</p>	<p>제6조(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 ①----- ----- <u>200원</u> ----- ----- ----- -----</p> <p>②~④ (현행과 같음)</p>	<p>제6조(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 ①----- ----- <u>200원권</u> ----- ----- ----- -----</p> <p>②~④ (현행과 같음)</p>
<p>제7조(증지인수 및 보관)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제된 증지를 인수할 경우에는 구 수입금출납원 또는 세외수입계장(이하 "출납원"이라 한다)과 분임징수관(분임경리관)이 입회하여야 한다.</p> <p>②~④ (생략)</p>	<p>제7조(증지인수 및 보관)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제된 증지를 인수할 경우에는 구 수입금출납원 또는 <u>세외수입계장</u>(이하 "출납원"이라 한다)과 분임징수관(분임경리관)이 입회하여야 한다.</p> <p>②~④ (현행과 같음)</p>	<p>제7조(증지인수 및 보관)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제된 증지를 인수할 경우에는 구 수입금출납원 <u>(삭 제)</u>(이하 "출납원"이라 한다)과 분임징수관(분임경리관)이 입회하여야 한다.</p> <p>②~④ (현행과 같음)</p>

※ 여타부분은 개정안과 같음